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57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강승규 · 박형수 · 김은혜
서지영 · 박정하 · 고동진
박상웅 · 박수영 · 김위상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1조의2제7항 신

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2111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24시간 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정 지원) ①·② (생략) <u><신 설></u>	제16조(재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u>
법률 제2111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⑥ (생략) <u><신 설></u>	법률 제2111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24시간 배치하여야 한다.</u>